1910년대 前半 朝鮮總督府의 取調局·參事官室과 '舊慣制度調査事業'

金 泰 雄

一. 머 리 말
二. 取調局 設置와 '舊慣制度調査事業'
1) 설치 배경
2) 소속 관원
3) '舊慣制度調査事業'
三. 參事官室 附設과 '舊慣制度調査事業'
1) 부설 경위
2) 소속 관원과 參事官分室
3) '舊慣制度調査事業'
四. 맺 음 말

一. 머 리 말

日帝는 1910년 조선을 강점하면서 政治·經濟·社會·文化 각 방면에 걸쳐 植民政策事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중 문화 부문 역시 두드러진 것이었다. 특히 이 시기 '舊慣制度調査事業'(이하 구관제도조사사업으로 표기—필자주)은 대표적인 사업이었는데 그 사업을 총괄적으로 추진한 기구는 총독부 소속관서인 取調局이었다.

이 사업은 1912년 총독부 관제개편 이후에도 參事官室을 거쳐 中樞院의 주요사업으로 꾸준히 추진되었다. 그것은 일제의 식민정책 수립과 사업 시행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奎章閣 藏書의 일부를 이루는 자료 역시 1910년대 일제 구관제도조사사업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植民地 文化政策[1]의 본질과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본고는 그 일차적인 작업으로 1910년대 前半 이 사업을 담당했던 취조국과 참사관실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구관제도조사사업의 내용과 그 의미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2]

---

* 필자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1) 종래 1920년대 일제의 식민통치를 '文化政治'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일제 스스로 그들 정책을 미화하고 피지배민족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전 용어에 불과하다. 여기서 다루는 문화정책 용어는 제국주의 식민통치정책의 한부문으로서 한정된다. 이 점을 염두한 가운데 양자를 구별하여 사용한다.

(2) 본고는 규장각도서 자료조사 연구사업의 하나인 '규장각 자료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의 일부이자 중간 결과 보고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후 작업을 거쳐 보완될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朴賢洙, 1980 〈日帝의 侵略을 위한 社會·文化 調査活動〉《韓國史硏究》30.
———, 1980 〈朝鮮總督府 中樞院의 社會·文化〉《韓國文化人類學》12.

二. 取調局 設置와 '舊慣制度調査事業'

1) 설치 배경

일제는 1910년 8월 조선을 강점하면서 식민지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그 주축은 총독부와 소속기구였다.

이들 기구들은 정치·경제·사회 뿐만 아니라 문화부문에 이르는 전영역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였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화정책 역시 제반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그 만큼 문화정책은 식민지 정치·경제정책과 함께 근간을 이루면서 이들 제부문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교육, 언론, 종교와 문화[3] 부문 등 사회구성의 상부구조와 관련된 이데올로기 영역 부분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漸進的 同化主義에 입각하여 시행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민족문화의 말살이 목적이었다.[4]

그런데 이러한 정책은 植民地 基礎調査事業을 전제하였다. 취조국은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5]

1910년 9월 30일 칙령 제356호에 보이는 취조국에 관한 주요 규정이 제 1 조에 명기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6]

제 1 조 조선총독부 취조국은 조선총독에 隷하여 좌(다음—필자주)의 사무를 관장한다.

一. 朝鮮에서 各般의 制度와 一切의 舊慣을 調査하는 일
二. 總督이 지정한 社會의 立法과 審議를 하는 일
三. 法令의 廢止 改正에 부쳐 의견을 具申하는 일

여기서 취조국의 설치 목적이 구관제도조사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일제의 법률제정 심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의 구도는 이미 대만통치경험에서 보인다.[7]

愼鏞廈, 1980 〈奎章閣圖書의 變遷過程에 대한 一硏究〉《奎章閣》 5.
姜東鎭, 1983 〈文化主義의 基本性格〉《한국사회연구》 2, 한길사.
趙凡來, 1992 〈日帝總督府 中樞院의 初期 構造와 機能〉《한국독립운동사연구》 6.

(3) 좁은 의미의 문화개념으로서 학문·예술 등에 한정된다.

(4) 이와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永井柳太郎, 1921 《植民原論》, 巖松堂書店.
天澤不二郎, 1939 《植民政策入門》, 巖翠堂書店.
中村 哲, 1943 《植民地統治法의 基本原理》, 日本評論社.

(5) 취조국 외에 이 시기 이러한 기초조사사업을 추진한 기구는 內務部 學務局과 地方局이다. 학무국의 경우, 史料調査를 추진하였고(關野貞, 谷井濟一, 栗山俊一 등), 지방국의 경우는 古蹟調査를 추진했다(小田省吾, 鳥居龍藏, 今西龍, 黑板勝美 등).
朝鮮總督府, 1940 《施政三十年史》, pp. 97-99.
朴慶植, 1986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支配》 (청아출판사, 서울판), p. 157.

(6) 《朝鮮總督府官報》 (이하 관보로 줄임) 제28호, 칙령 제356호 1910년 9월 30일.

(7)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할 것.

당시 대만과 조선의 식민정책에 깊이 관여한 持地六三郎[8]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9]

> 현시에 문화의 정도를 달리하고 사회의 상태를 달리하기 때문에 이 조화 동화는 점진적이어야 하지 급진적이어서는 안된다. 특히 토지제도가 다르고, 인사의 관습이 다르고 토지에 관한 권리, 친족, 상속 등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본국의 법제를 적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때문에 시무의 要는 즉 민족관습에 적응해야 할 특수 법규의 제정에 있다. 어느 정도에 있어서 본국의 법제를 적용하고 어느 정도에 있어서 특수의 법제를 제정하고 그간의 교섭운영에서 어그러짐이 없이 결국은 조화 동화의 목적에 도달하는 것은 대개 식민지 법제가의 응당 노력해야 할 要意이지 않으면 안된다

라고 하면서 구관조사의 이유를 점진적인 동화주의정책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일제는 일찍부터 이러한 기초조사사업에 착수하고 있었다. 그것은 식민지 법제의 제정이 목적이었는데 1906년부터 1910년에 걸쳐 벌인 不動產法調査會와 法典調査局의 조사사업이 그것이다. 이들 기구는 法部顧問 梅謙次郎[10]이 중심이 되었는데, 그는 1908년 5월부터 1910년 9월까지 일본의 民商法 關係에 따라 만든 206개의 조사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民商事慣習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이 조사내용은 1912년 「朝鮮民事令」과 「朝鮮刑事令」의 골격을 이루었다.[11]

당시 이 사업과 관련하여 총독부 내에서는 '조선은 하루 빨리 內地化하는 것이 좋다'는 소위 (風俗) 同化主義 내지 內地延長主義가 팽배하였는데 당시 구관제도조사사업의 실무자였던 小田幹治郎는 영국통치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조선의 '구관풍속'을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12]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오랜 역사시기를 경험한 조선의 현실을 감안한 소치였다.[13]

矢內原忠雄, 1933(3판) 《植民과 植民政策》, 有斐閣, pp. 389-394.
中村 哲, 1942 〈植民地法에 있어서 同化政策一六·三問題以後의 律令權의 問題〉 《國家學會雜註》 56-4.
山本有造, 1992 《日本植民地經濟史硏究》 第 I 部 植民地統治의 構造, 名古屋出版會.

(8) 持地六三郎 : 1867년생. 福島縣 출신. 1893년 동경제국대학 정치학과 졸업. 대만총독부 참사관 역임. 1912년 渡鮮, 1917년까지 조선총독부 토목국장 역임(朝鮮公論社, 1917 《在朝鮮內地人紳士名鑑》; 民衆時論社, 1935 《朝鮮功勞者名鑑》).

(9) 持地六三郎, 1912 《臺灣植民政策》, pp. 86-87.

(10) 梅謙次郎(1860~1910) 明治時期의 법학자. 문학박사. 1880년 司法省 法學校에 입학하여 1884년 수석 졸업. 1885년 프랑스 유학하여 리용대학에서 수학. 1900년 귀국하여 東京帝大 교수에 임명되, 사망할 때까지 동경제대 법대 교수 역임. 그 동안 농상무성 참사관, 법제국 장관, 문무성 총무장관 역임. 특히 1893년 4월 法典調査員으로 되어 주로 民法, 商法을 입안, 기초하여 일본 입법사상 지대한 공헌을 함. 1906년 6월 한국정부의 法部顧問이 되어 식민지 입법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新撰大人名辭典》, 1937 平凡社).

(11) 이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李丙洙, 1977 〈朝鮮民事令에 關하여 一第11條의 慣習을 중심으로一〉 《法史學硏究》 4.
尹大成, 1991 〈日帝의 韓國慣習調査事業과 民事慣習法〉 《昌原大學校 論文集》 13-1

(12) 朝鮮司法學會, 1940 〈朝鮮司法界의 往事를 말하는 座談會〉 《朝鮮司法學會雜註》 19-10·11, pp. 1228-1229.

(13) 《朝鮮總督府施政年譜》 (1910), p. 58.

그러나 1910년 조선 강점 이후 일제는 종래의 법전조사국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총독부 직속기구로 취조국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부동산조사회와 법전조사국의 구관제도조사사업이 취조국으로 인계되면서 일제는 조사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2) 소속 관원

취조국의 소속 관원은 칙령 제356호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4]

제 2 조　취조국에 좌(다음—필자주)의 직원을 둔다.

長　官		勅任	
書記官	專任	2인	奏任
事務官	專任	4인	奏任
屬·通譯生	專任	12인	判任

제 7 조　취조국에 委員 30인 이내를 둔다.

그리하여 동년 10월 1일 취조국 장관 石塚英藏 이하 직원을 임명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위원으로 金敦熙 외 5명을 발령하였다.[15] 〈表 1〉은 이 시기 취조국의 관원 명단이다.

〈表 1〉 取調局의 官員 名單

職　位	所　屬　官　員
長　官	石塚英藏
書記官	中山成太郎
事務官	鹽川一太郎, 佐竹義準, 小田幹治郎, 時永浦三
屬	有賀啓太郎, 安藤 靜, 吉田英三郎, 宮 定平, 小田信治, 服部敬一, 西村洪治, 金原良助,
囑託[16]	河合弘民, 蜷川 新
通譯生	園木末喜
委　員	宋榮大, 朴承祖, 朴彛陽, 玄檃, 金敎獻, 鄭丙朝, 金漢睦, 崔泓俊, 朴宗烈, 金敦熙
委員囑託	劉猛(중추원), 鄭萬朝(이왕직), 具義書(중추원)

* 출전 : 《朝鮮總督府와 所屬官署職員錄》(1911)
《朝鮮紳士銘鑑》(1911)

그리고 이들 관원 중 일부 주요 인물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17]

朝鮮史編修會, 1938《朝鮮史編修會事業概要》, 朝鮮半島史編纂要旨.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이미 군부와 민간인의 조사활동에서도 역력히 드러나는데 주로 다른 영미제국의 식민지 조사사업과 달리 인류학적 실지조사 보다는 역사적 이해·문헌조사에 치중되고 있음에서 알 수 있다(박현수, 앞 논문).

(14) 《관보》 제28호, 칙령 제356호, 1910년 9월 30일.

(15) 《매일신보》 1910년 11월 12일.

(16) 《朝鮮紳士名鑑》(牧山耕藏, 1911)에만 보인다.

(17) 朝鮮文友會, 1913《朝鮮紳士寶鑑》.
朝鮮紳士錄刊行會, 1931《朝鮮紳士錄》.
民衆時論社, 1935《朝鮮功勞者名單》.

*石塚英藏 : 1863년 생. 福岡縣 출신. 1890년 東京帝國大學 법과대학 정치학과 졸업. 법제국 참사관 겸 서기관에 피임. 1898년 대만총독부 참사관장. 1907년 한국통감부 참여관 역임. 1910년 10월 취조국 장관 피임. 1912년 농상공부 장관 역임. 1916년 東洋拓殖會社 총재 역임.

*河合弘民 : 1873년 생. 1919년 몰. 1908년 東京帝國大學 문과졸업. 각지의 중학교에서 교편 잡음. 1907년 東洋協會 전문학교 경성분교의 敎頭로 섰고, 조선에 있는 동안 조선사를 연구한 바 그 업적에 의해 1916년 문학박사 학위 받음. 이 때 조선에서 많은 도서를 약탈함. 가령 헌병사령관 겸 경무총감인 明石元二郎의 힘을 빌어, 강화도 傳燈寺에 보관되어 있는 수천 권의 귀중한 도서를 약탈함. 이후 이들 도서는 京都大學 河合文庫本으로 소장됨. 그 뒤 협회전문학교 교수로 돌아가 교수직 역임.

*蜷川 新 : 학자로 법학박사. 1872년 생. 東京 출신. 東京帝國大學 법학부 졸업. 구미에 유학, 러일전쟁에 종군. 조선에서 판리 역임. 그후 同志社 대학 교수. 동양척식회사 촉탁. 국제문제의 저명한 연구가.

*鄭萬朝 : 학자. 1858년(철종 9) 생. 본관은 東萊. 基雨의 아들. 姜瑋의 문인으로서 1884년(고종 21) 교섭통상아문주사가 되고 1889년 謁聖文科에 병과로 급제. 1894년 내부참의. 1908년 규장각 부제학이 되고 헌종 철종 양조의 國朝寶鑑編纂學員이 됨. 1910년 이후에는 이왕직 典祀官 총독부 중추원 촉탁. 조선사 편수회 위원 역임. 1926년에 경성제국대학 강사. 1929년 經學院 대제학. 이왕가 실록편찬위원. 저서는 《茂亭全稿》.

*鄭丙朝 : 학자. 1863년(철종 14) 본관은 東萊. 基雨의 아들. 정만조의 아우. 1882년(고종 19) 진사시에 합격. 1894년 동궁 시종관. 1910년 이후 중추원 촉탁으로 《朝鮮史》 편찬에 참여. 저서는 《鹿魚山館集》.

*金敎熙 : 1871년(고종 8) 생. 1936년 몰. 서예가. 예서에 능함. 서화협회 회장. 조선미술전람회 심사위원 역임. 중추원 촉탁 역임.

*金敎獻 : 1868년(고종 5) 생. 1923년 몰. 대종교 제 2 대 교주. 본관은 慶州. 1885년(고종 22) 庭試文科에 병과로 급제. 1892년 예조참의. 1903년 문헌비고 찬집위원. 1909년 규장각 부제학. 이해에 대종교에 입교. 1916년 대종교 제 2 대 교주가 됨. 독립운동 활동. 저서는 《神檀民史》, 《神檀實記》, 《檀記事故》.

*金漢睦 : 1872년 생. 安東 출신. 1895년 대구 우체사 주사. 1901년 중추원 의관. 1904년 농상공부 광산국장. 1910년 11월 취조국 위원. 1912년 구관조사에 관한 사무 촉탁. 1918년 중추원 副參議.

*國木末喜 : 1883년 생. 熊本縣 출신. 1899년 조선유학생으로서 파견됨. 1904년 러일전쟁 때 조선주차사령부 통역으로서 조선통신원 감독으로 피임. 39년 통감부 설치와 함께 문관으로 전보. 감사국에 근무. 伊藤博文 사건 심리로 만주에 출장. 관방 참사관실 근무 동 분실주임이 됨. 1915년 궁내부로 옮김. 1922년 상업은행에 초빙됨. 「朝鮮刑事令」, 「朝鮮民事令」 등을 번역.

*宋榮大 : 유학자. 1851년 생. 본관은 礪山. 홍문관응교, 중추원참서 겸 내각 참사관, 중추원 부찬의 등 역임. 조선총독부 취조국 위원.

*時永浦三 : 1884년 생. 廣島縣 출신. 1899년 東京帝國大學 법과대학 졸업. 바로 統監府 屬으로 渡鮮. 1910년 이후 조선총독부 사무관 역임.

그리고 이들 관원 중 이미 법전조사국에 참여한 인물로는 小田幹治郎, 安藤 靜 등을 들 수 있다.[18]

《大人名辭典》(1957), 平凡社.
神谷敏夫, 1940 《增訂 最新日本著作者辭典》, 大同館書店.
《韓國人名大辭典》(1967), 新丘文化社.

(18) 鄭肯植, 1991 〈開化期(1895~1910) 立法關連者 名單〉《法史學硏究》 12, p. 209.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취조국 관원은 주로 이전 법전조사국에서 활동했던 인물들과 식민정책입안의 실무자들이 주축을 이룬 가운데 규장각 출신 조선인 학자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일본 관원들은 동경제국대학 법과대학 출신들이 대부분이다.[19] 이러한 구성은 취조국의 기본 사업이 일본법제를 기본으로 하여 식민지 법제를 마련하고자 함을 반영한다. 다만 조선재래의 관습과 제도를 조사한다는 취지에서 규장각 출신의 인물이나 서예가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 만큼 문헌조사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것이다.

3) '舊慣制度調査事業'

(1) 구관제도조사

취조국의 기본사업은 구관제도의 조사이다. 특히 1910년 8월 조선강점 이후 植民地 統治機構에 자료를 제공하고 司法裁判의 準則으로 삼을 慣習을 제시하여 法制의 기초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두어졌다. 당시 민사령, 형사령 제정에 한정되지 않고 그 밖의 사항 등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가령 親族法과 相續法의 제정 역시 당면과제였다.[20] 그 만큼 조사의 필요성이 절실해지면서 조사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항목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21]

① 土地制度 ② 親族制度 ③ 面과 洞의 制度 ④ 宗教와 寺院의 制度 ⑤ 書房과 鄕校의 制度 ⑥ 兩班에 관한 制度 ⑦ 四色의 起源, 沿革과 政治上 社會相에 있어서 勢力關係 ⑧ 四禮制度 ⑨ 常民의 生活狀態 ⑩ 朝鮮에 있어서 救貧制度 ⑪ 朝鮮에서 행해진 重要法典의 飜譯 ⑫ 朝鮮에 있어서 農家經濟 ⑬ 朝鮮의 統治에 參考할 歐美各國의 屬領과 植民地의 制度 硏究 ⑭ 舊法典調査局에 있어서 調査事業의 整理 ⑮ 地方制度 ⑯ 灌漑에 관한 舊慣과 制度 ⑰ 鴨綠江과 豆滿江에 관한 調査 ⑱ 朝鮮語辭典의 編纂

그 밖에도 이 조사와 관련된 地方制度·小作關係·水利의 設備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구관의 조사는 주로 조선의 古書와 각지의 慣例에 따르고 제도의 조사는 조선에서의 연혁과 구미제국의 제도를 참작하여 양자 모두 필요에 따라 실지에 나아가 精査할 방침을 채택하고 조사에 착수하였다.[22] 그리하여 1911년 1월에 시작하여 6월 사이에는 面 및 洞에 관한 制度舊慣調査大要, 四色制度, 社還米制度, 三神, 三國, 漢四郡, 二府, 高麗 및 朝鮮 地方制度의 沿革, 鴨綠江 水利에 관한 조사를 완수하였으며[23] 1911년 7월에서 12월까지는 地稅 및 諸稅에 관한 制度, 慣習, 農民의 經濟 및 生活狀態 조사, 장래의 地方費와 구역의 재정과 일본인·조선인의 부담, 고조선 이후 역대의 영토 영역 도해, 고려 이래 토

(19) 이 문제는 당시 동경제국대학 법과대학의 학문 경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지 않나 추측된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0) 《朝鮮總督府施政年譜》(1911), pp. 22-24.
(21) 《舊慣制度調査事業槪要》(이하 개요로 줄임) pp. 23-24.
(22) 위와 같음.
(23) 위와 같음.
《매일신보》 1911년 10월 14일.

지분배의 연혁, 吏胥에 관한 조사, 양반제도 개요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 밖에 각국에서의 小作關係, 火田에 관한 조사, 西北事情 등을 들 수 있다.[24] 그 밖에 취조국은 이전 법전조사국이 조사한 사항을 정리하여 《慣習調査報告書》를 간행하였다.[25]

그리고 이러한 조사의 방법은 實地調査와 文獻調査 그리고 法令에 대한 조사로 이루어졌다. 당시 조사대상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대략 이전 법전조사국의 경우와 비슷하지 않았나 추측된다. 겨우 1년 여의 세월에 걸쳐 광범위하고도 세세한 조사를 하기에는 여러 모로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전 법전조사국의 방법을 답습하였음이 분명하다.[26]

그러나 이러한 조사는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27] 특히 문헌조사의 경우, 실지조사에 비해 소략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가령 실제 조사한 문헌도 법전을 제외하면 4종에 지나지 않았고 또 전체에 걸치는 것이 아니라 禮書에 편중되었다. 비록 취조국이 법전조사국의 경우 보다 조사 범위를 확장하였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범주에 한정되었을 것이다. 다만 문헌조사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되는 계기로 작용했으리라 추측된다. 그것은 奎章閣 圖書의 정리와 《大典會通》의 번역·출간, 실록의 조사[28] 및 朝鮮語 辭典의 편찬·朝鮮圖書 解題의 편찬으로 나타났다.

(2) 奎章閣 圖書의 정리

일제는 1910년 8월 조선강점 직전 弘文館·奎章閣·集玉齋·侍講院·北韓山 離宮과 江華鼎足山의 史庫 등에 소장되어 있는 도서를 宮內府에 이관하였다. 곧 이어 1911년 2월 궁내부 소장도서를 조선총독부의 도서로 점유하기로 결정한 뒤, 1911년 6월에 조선총독부 취조국에서 이를 강제로 인수하였다.[29] 이 때 입수된 도서를 보면, 이들 도서 약 11만권과 그 외 景福宮내 慶成殿에 소장된 강화사고 도서 5,000권 그리고 赤裳山 奉化史庫와 五臺山 平昌史庫, 茂朱史庫의 도서가 일체였다.[30]

그리고 이들 도서 정리사무는 事務官 1인, 屬 2인, 雇 3인과 조선인 5인으로 담당케 하

(24) 《朝鮮總督府施政年譜》(1911), pp. 22-24.

(25) 《개요》, p. 19.
韓國法制硏究院 譯, 1992 《國譯 慣習調査報告書》(朝鮮總督府, 1910년, 1912년, 1913년 간행 《慣習調査報告書》).

(26) 법전조사국의 경우, 문헌조사로는 《經國大典》과 《大明律》 등 법전과 《家禮》 등 禮書를 조사하였다. 또한 실제의 법률 생활을 조사하기 위해 거래 문서 등을 조사하였는데, 이 가운데에는 순수한 거래문서만이 아니라 법령에서 규정한 서식 등도 조사하였다.
韓國法制硏究院 譯, 1992 《國譯 慣習調査報告書》(朝鮮總督府, 1910년, 1912년, 1913년 간행 《慣習調査報告書》), p. 27).

(27) 淺見倫太郎, 1922 《朝鮮法制史考》, 巖松堂書店, pp. 378-401.

(28) 《朝鮮王朝實錄》의 경우, 1,187책 중 632책으로 선조초엽까지를 조사 완료하였다(《朝鮮總督府施政年譜》(1911), pp. 22-24).

(29) 《圖書關係書類綴》(奎 26764).

(30) 이 때 규장각의 도서에는 5,353부, 10,187책이 보관되어 있었고 기록과에는(대한제국정부) 기록류 11,730책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鑄字, 板木 그 밖의 관련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다(朝鮮總督府 取調局, 1911 《圖書關係書類綴》(奎 26764)).

였다.[31] 그 결과 도서정리가 이루어졌다. 우선 李王職 기록과에서 정리하지 못한 도서들을 정리하였으며 중국도서를 정리하였다.[32] 그 밖에 辭書比較便覽, 서적목록대장, 조선도서목록을 정리하였다.[33]

다음 취조국 장서 중국·조선서적의 목록작성과 書庫內 배열에 관해서는 미리 經·史·子·集으로 크게 나누기로 결정하고 그 분류는 〈表 2〉와 같이 정하였다.

〈表 2〉 取調局의 圖書整理 分類 方式

區　分	內　　容
經　部	四書五經類, 字彙類
史　部	系譜記錄類, 歷史類, 政治法律類, 傳記雜記類, 地理類, 年表目錄類
子　部	儒道佛類, 兵農醫類, 天文算類, 類書類, 叢書類, 雜書類, 藝術類.
集　部	別集類, 總集類, 修辭類

出典 : 《圖書關係書類綴》(奎 26764)

그리고 도서정리작업의 부속사업으로서 解題作業計劃을 수립하였다. 식민지 통치의 기초자료로서 목록만으로는 내용을 알기 어려워 계획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1만부 이상의 서적을 해제하는데 1912년 봄까지 계획하기도 하였다.[34]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해제양식은 〈表 3〉과 같다.[35]

〈表 3〉 取調局의 朝鮮圖書 解題 樣式

書　名	卷　數	冊　數	作　者	字　號	年　代	版　種	日本紀元

出典 : 《圖書關係書類綴》(奎 26764)

뿐만 아니라 민간에 산일된 조선의 도서를 구입하여 완전하게 갖춘 朝鮮書圖書館을 설립하고자 하였다.[36] 그 밖에 實錄 拔萃作業을 벌여 1911년 10월 현재 187책을 완료했다. 또한 1911년 5월부터 경복궁에서 정리 중에 있던 대한제국시기의 公文書 조사를 대략 완료하였다.[37]

(3) 《大典會通》의 번역

《대전회통》의 번역은 일차적으로 民事令, 刑事令 등 여러 법률의 제정에 참고하는 데 목

(31) 《圖書關係書類綴》.
(32) 그 결과 목록 등이 작성되었는데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다수 소장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愼鏞廈, 1981 앞 논문, p. 74 참조.
(33) 위와 같음.
(34) 《매일신보》, 1911년 8월 8일.
(35) 이러한 양식에 입각하여 해제한 서적으로는 《新增輿地勝覽》과 《東國輿地勝覽》 등이 《圖書關係書類綴》에 소개되어 있다(같은 책).
(36) 《圖書關係書類綴》.
(37) 《매일신보》, 1911년 8월 1일.

적이 있었다. 특히 일제가 무엇보다 《대전회통》에 주목한 것은, 《대전회통》이 《經國大典》, 《續大典》, 《大典通編》 등 전법전들을 포함하고 있어 조선조 5백년간의 법령을 역사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용하기에는 原文通讀부터 불편하여 오류를 야기하며 또 관청의 참고로 삼아 직원이 집무에 직접 이용할 수 없었다.[38]

그리하여 1910년 11월에 번역에 착수하여 1년 여에 걸쳐 완성하였다. 여기에는 鄭丙朝, 金敦熙 등이 참가하였다.[39] 이후 다시 개정 보수할 필요가 있어 참사관실에서는 종래의 번역본을 참고로 하여 다시 번역에 착수하여 1913년에 완료하였다.[40] 이 과정에 앞의 두 사람 외에 中山成太郎, 小田幹治郎, 鹽川一太郎 등이 참가하였다.

三. 參事官室 附設과 '舊慣制度調査事業'

1) 부설 경위

일제는 1912년 4월 조선 총독부 관제를 개정하면서 취조국을 폐지하였다.[41] 그런데 이 개정이 단지 취조국 자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총독부 관제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우선 1910년 8월 일제가 조선강점을 단행하면서 마련한 조선 총독부관제가 규모가 방대하며 그 중 고급관료가 많은 반면에 실제로 사무에 해당하는 事務官, 判任官이 비교적 적었다. 그것은 총독부 직할의 5부가 대한제국정부의 각부를 그대로 계승하였기 때문이었다.[42] 따라서 중앙각부의 행정비를 절감하는 한편 지방행정의 업무는 식민지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식산산업의 발달과 함께 방대해짐에 따라 각도에 정원을 증가하고 事務官, 技師, 書記, 技手를 배치하여 지방지배와 식민지 산업의 기초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43]

그리하여 총무부를 폐지하고 그 사무를 官房에 옮기며 취조국, 인쇄국과 전매국을 폐지하고 그 사무를 총독부 관방과 탁지부에 옮기며 관방에 토목국을 설치하고 통신국을 체신국으로 개칭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912년 이후부터 일제는 식민지 기간산업의 육성과 지방통치의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로서는 취조국이 해 오던 구관제도조사사업을 중지할 수는 없었다. 사업이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닌 데다 후속 작업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취조국과 같은

(38) 《개요》, p. 27.
(39) 《매일신보》, 1910년 11월 20일.
(40) 《대전회통》의 출간은 재차 미루어져 중추원에서 수정할 뒤 1921년에 가서야 이루어졌다(《개요》, p. 28).
(41) 《관보》 호외, 1912년 3월 27일, 칙령 제26호.
(42) 田保橋潔, 1944 《朝鮮統治史論考》, p. 65.
(43) 《매일신보》 1912년 4월 6일.
《朝鮮總督府施政年譜》 (1912), p. 31.

圖 1) 朝鮮總督府와 所屬官署(1911. 3. 3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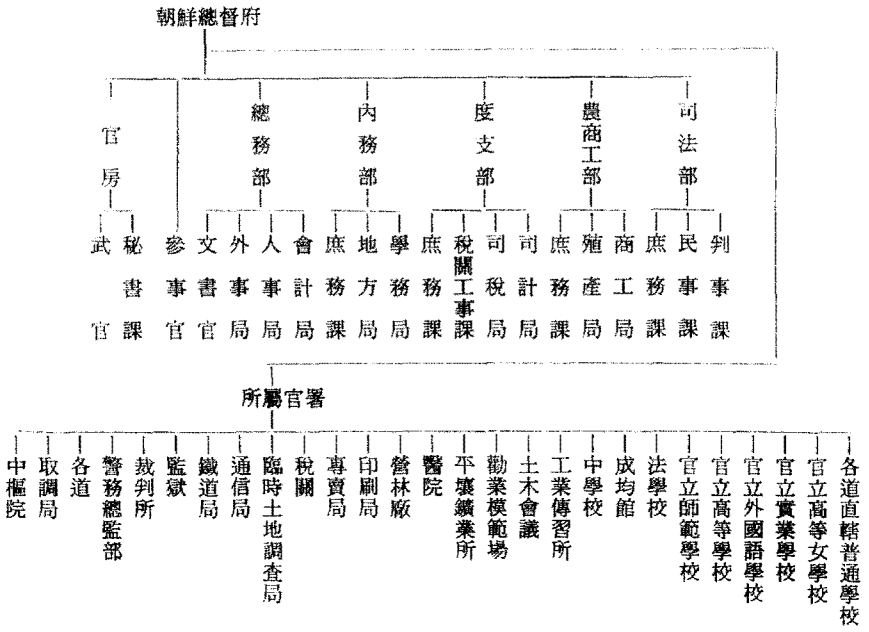

出典：《朝鮮總督府施政年譜》(1911)

圖 2) 朝鮮總督府와 所屬官署(1913. 3. 3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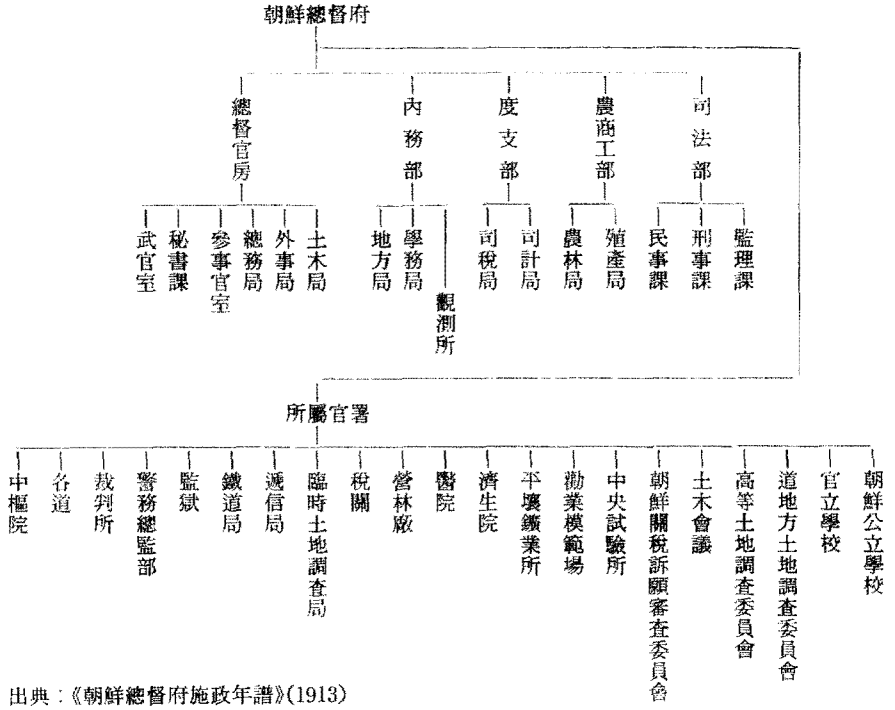

出典：《朝鮮總督府施政年譜》(1913)

독자적인 기구를 두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관제 개정의 의도와 맞지 않았다. 따라서 일제는 기존 官房의 秘書課, 武官室과 별개로 관방 직속에 參事官室을 부설하고 여기에 기존 관방의 관원들 중 참사관을 중심으로 하여 관원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1912년 3월 30일 훈령 27호에 따라 참사관의 사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44)

제 1 조 官房에는 秘書課, 武官室, 參事官室을 둔다.
제 2 조 參事官室에 있어서는 左(다음一필자주)의 事務를 관장한다.
一. 法令의 審議立案에 관한 사항
二. 法令의 解釋適用과 중요한 處分의 審議에 관한 사항
前項 외에 참사관실에서는 조선에서 制度와 舊慣 그 밖의 特命에 의한 조사에 관한 사항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참사관실의 설치는 총독부관제 개편의 취지를 살리면서 구관제도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참고로 이 시기 조선총독부와 소속 관서의 변천은 圖 1)와 圖 2)와 같다.

2) 소속 관원과 參事官分室

개편 이전 참사관은 특정 관서에 소속되지 않고 단지 상관의 명을 받아 심의 일반을 맡거나 각 部局의 사무를 보조하였다.(45) 그러나 개편 이후 취조국의 구관제도조사사업을 맡

〈表 4〉 1911년 參事官과 1912년·1914년 參事官室의 官員

職位 \ 年度	1911	1912	1914
參事官	秋山雅之介	秋山雅之介	秋山雅之介
	中山成太郎	中山成太郎	大塚常三郎
	太田輝次	太田輝次	和田 駿
	和田 駿	和田 駿	藤田嗣雄
試補			杉本 郎
事務官		小田幹治郎	小田幹治郎
屬		安藤 靜	有賀啓太郎
		三好鱗造	三好鱗造
		小田信治	馬場是一郎
		瀧口亮進	瀧口亮進
		西村洪治	西村洪治
			中里伊十郎
			金子正潔
			後藤積
通譯生		園木末喜	園木末喜
判任官見習			渡邊業志
			野口三郎
			金明淵

出典:《朝鮮總督府와 所屬官署職員錄》《在朝鮮內地人名鑑》《朝鮮紳士銘鑑》

(44) 《관보》 제475호, 훈령 27호, 1912년 3월 30일.
(45) 《관보》 제28호, 칙령 제354호, 1910년 9월 30일.

으면서 참사관은 관방 부속 참사관실로 확대·개편되었다. 1911년의 참사관과 1912년·1914년 참사관실의 소속관원은 〈표 5〉와 같다.

〈표 1〉과 대조할 때 취조국 관원이 그대로 참사관실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참사관실내에 설치된 참사관분실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다. 그 분실 사무 담임표는 〈表 5〉와 같다.

〈表 5〉 參事官分室의 分任

직　무	관　원
감　독	國分象太郎
도서정리 주임(전임)	園木末喜(通譯)
	邊中藤壽
	南雲幸吉(雇員)
	昆上幸春(雇員)
	玄燮(寫字生)
	金淳鼎(寫子生)
	金胤福(寫子生)
	黑田甲子郎(囑託)
	千葉昌胤(囑託)
(겸)	鄭萬朝(囑託)
도서해제 주임(전임)	千葉昌胤(囑託)
	鄭萬朝(囑託)
	鄭丙朝(囑託)
(겸)	金胤福(寫子生)
사서편찬 주임(전임)	川上立一郎(囑託)
	瀧口亮造(屬)
	西村洪治(屬)
	金子正濟(屬)
	寺田常治(雇員)
	井上琢磨(雇員)
	朴彛陽(囑託)
	玄燮(囑託)
	宋榮大(囑託)
	金敎熙(囑託)
실록발췌 주임(겸)	有賀啓太郎(屬)
	劉猛(囑託)
	具義書(囑託)
	不明(囑託)
	徐相勛(囑託)
	鄭萬朝(囑託)
	鄭丙朝(囑託)
도서와 참고자료 수집과 정리 주임(겸)	有賀啓太郎(屬)
(겸)	中里伊太郎(屬)
(겸)	渡邊業志(見習)
傭人監督	園木末喜(通譯生)
기　타[46]	高橋　亨(囑託)
	金榮漢(囑託)
	林大奎(雇員)
	草場謹三郎(囑託)
	張之兌(雇員)

* 1913년 7월 1일 현재

** 出典 :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一)(이하 참사관분실관계서류로 줄임)
《出勤簿》(奎 20816)

이들 관원 중 참사관분실에 재직 중인 주요 인물의 이력은 다음과 같다.[47]

(46) 《참사관분실관계서류》에는 보이지 않고 《출근부》에만 나오고 있어 직무를 알 수 없다.
(47) 註 17) 참조할 것.

* 和田 駿 : 1882년 생. 和歌山縣 출신. 1909년 경도제국대학 법과대학 졸업. 동년 통감부 총무부에 들어와 총독부 비서과와 내무부를 거쳐 철도국참사로 전보되고 1916년 총무과장에 피임.
* 國分象太郎 : 1862년 생. 長崎縣 출신. 京城領事館書記生 역임. 공사관 서기생, 통역관, 서기관으로서 오랫동안 조선에서 활동. 통감부 서기관에 재직중 통감부 비서관 겸임. 1910년 이후 이왕직 사무관에 피임. 1917년 이왕직 차관 역임. 이후 각종 조사위원 겸 편찬위원으로 활동.
* 秋山雅之介 : 1866년 생. 廣島縣 출신. 1890년 東京帝國大學 법과대학 졸업. 졸업직후 외무성 근무. 영국과 러시아 등지에서 근무. 1905년 법학박사학위 받음. 1910년 11월 조선총독부 참사관에 피임. 1916년 중추원서기관장 겸무.
* 高橋 亨 : 1878년 생. 新潟縣 출신. 유교철학의 연구자로서 조선불교사, 조선사상사의 연구가. 1902년 동경제국대학 支那哲學科 졸업. 九州日報 주필. 1905년 2월 한국경성관립중학교 교사로 초빙됨. 1910년 이후 경성고등보통학교 교유 역임. 1916년 대구고등보통학교 교장으로 발탁됨. 1924년 총독부 視學官 겸 경성전수학교 교수(이후 경성법학전문학교). 1925년 경성제국대학 예과교수를 거쳐 1926년 4월 대학교수로 승진.
* 杉本 良 : 1886년 생. 靜岡縣 출신. 1913년 東京帝國大學 법과대학 英法科 졸업. 1915년 총독부 사무관 피임. 동년 4월 강원도 사무관 전보.
* 大塚常三郎 : 1880년 생. 栃木 출신. 동경제국대학 법과대학 졸업. 통감부 서기관으로서 渡鮮. 총독부 서기관, 참사관, 사무관을 거쳐 중추원서기관장 역임. 내무국장 역임(1919년~1925년).
* 金明淵 : 1893년 생. 개성 출신. 1913년 경성고등보통학교 졸업. 동년 3월 보통문관시험에 합격. 1914년 총독부 참사관실 屬으로 승진. 내무부, 식산국에 근무. 농림국 농무과 屬으로 발탁.
* 後藤 積 : 1889년 생. 大分縣 출신. 1909년 중앙대학 전문부 경제학과 졸업. 1910년 11월 총독부 취조국 근무. 1913년 총독부 屬. 1921년 임야조사위원회 서기.
* 野口三郎 : 1889년 생. 佐賀縣 출신. 1908년 仁川山尋常高等小學校 교원. 1912년 渡鮮. 관방 참사관실에서 근무. 1914년 屬에 피임.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취조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조계 인물과 식민정책 입안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다만 일제는 참사관분실을 별도로 설치하여 대한제국 도서의 정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취조국 시기에 미진했던 도서해제와 신록발췌의 경우, 규장각 출신 조선인 관원들을 주로 배치하여 문헌조사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참사관실의 주요 업무는 법안을 심의하는 秋山雅之介, 小田幹治郎과 和田 駿 등 고위 실무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3) '舊慣制度調査事業'

(1) 구관제도조사

참사관실 역시 기본사업은 구관제도조사였다. 이전 취조국에서 완수하지 못한 사업이었다. 조사방침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난다.

우선 조사의 범위를 보기로 하자.

이전 조사는 民事와 商事의 전반에 걸친 필요가 있어도 이후 조사에서는 민사령의 규정에 따라 관습의 적용을 인정하는 사항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들 조

사문제를 작성하였다.[48] 다음 조사지점 48개소를 선정하여 출장 조사하였다. 그리하여 1913년 말에는 民事慣習 중 能力·親族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완료하고 1914년 말에는 物權·債券에 관한 관습조사를 종료하였다.[49]

그리고 조사방법은 實地의 관행과 典籍에 의한 법제조사를 병행하였다. 특히 典籍을 조사함에는 주로 중국과 조선의 전적을 섭렵하고 조사사항에 관계된 것을 발췌하여 그것을 편찬하도록 하였다. 출장조사는 관리가 道廳 또는 府郡廳에 나가, 조사문제에 들어 있는 관습을 응답하는데 적당한 자를 선발·소집하여 청취하였다.[50]

끝으로 부분조사서를 편찬하였는데 법제조사서와 관습조사서를 구별하고 각 사항에 부친 법제와 관습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방침에 입각하여 1914년까지 조사를 하였다.[51]

그리하여 나온 조사보고서는 실지조사 즉 출장조사에 의한 보고서는 123책, 전적조사에 의해 발췌한 조사자료는 83책에 달했다. 또 그 밖에 취조국에 이어서 《朝鮮王朝實錄》으로부터 요강을 발췌하였다. 즉 法典, 親族, 相繼, 遺言, 戶口, 貨幣, 戶牌, 奴婢, 良役, 諸田, 貢賦, 稅制, 冠婚喪祭 등 30여 항으로 나누어 이에 관한 사항을 색인으로 편성하여 선조대 이후 555책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承政院日記》 조사에 착수하였다.[52]

이와 같이 전적조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서수집과 도서정리, 해제작업이 가속화되었다.

(2) 參考資料 수집

일제는 1913년 2월 金石文과 그 밖의 참고자료가 될 만한 것을 수집 조사하기 위해 정무총감의 이름으로 각도 장관에게 통첩하였다. 그 취지만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53]

> 참사관분실에 소장된 구한국정부와 오대산서고의 서적은 浩瀚하여 考古의 재료로 삼을 것이 적지 않을지라도 사료의 수집에 부쳐서는 유감이 많다.

그러면서 조선도서의 수집, 금석문의 수집, 板木, 匾額 등의 조사와 經文과 記錄 등의 조사를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통첩에 이어 조선에서 주요한 금석문에 부쳐 목록을 작성하여 각도에 송부하고 동년 9월 각도 장관과 각도 경무국 부장에게 참고가 될 만한 6종의 자료를 수집하라는 의뢰문을 발송하였다. 이 때 포함된 자료는 ① 조선금석문 ② 조선도서 ③ 조선 각군 읍지 ④ 고문서 ⑤ 책판 ⑥ 참고품이었다.[54]

---

(48) 《개요》, p. 35.
(49) 위 책, pp. 38-40.
(50) 위와 같음.
(51) 위와 같음.
(52) 《朝鮮總督府施政年譜》 (1912), pp. 26-27.
(53) 《개요》, p. 41.
(54) 《개요》, p. 44.

금석문의 경우, 1913년 4월 경무부장회의에서 재차 의뢰되어 9월 각도 내에 있는 금석문의 목록을 송부하고 수집을 독촉하였다. 그리하여 1913년 말에는 수집된 금석문이 1,040종에 이르렀다.[55] 그리고 1914년 말에는 碑文鐘銘과 그 밖의 금석문이 1,377종에 이르렀고 1915년 말에는 금석문총수가 1,579종에 달하였다. 이후 1916년 3월 관방총무과(박물관)에 인계되었다.[56]

다음 조선도서와 각군 읍지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참사관실의 도서 이외 조선인의 저작 편찬에 관계된 도서를 구입 또는 조사한 결과 그 수가 59종 691책에 미쳤다. 조선각군 읍지를 참사관분실의 읍지와 내무부로부터 인계한 읍지를 아울러 정리하여 그 부족한 것은 각도에 통첩하여 등사를 구하고 직원출장 때 발견한 것은 등사하거나 또는 읍지 중 간략한 것은 다시 상밀한 것을 탐사하여 등사할 정도로 완벽을 기했다. 그 결과 1915년에는 읍지가 959종에 이르렀다.[57]

그 밖에 古文書와 册板 그 밖의 자료를 수집하거나 등사하였다. 고문서의 경우, 그 수가 67종에 달했다. 책판의 경우는 직원이 출장 서류를 가지고 관아와 사찰, 민간에서 조사하고 참고품의 경우는 직원이 출장할 때 寺刹, 寺址 그 밖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기와조각과 옛 도자기 등 참고할 만한 것을 수집하게 하였다.[58]

(3) 奎章閣 圖書의 정리

도서정리관계는 참사관 분실에서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1915년 12월 현재 참사관실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는 한국본 12,980종 70,232책, 중국본 6,481종 81,927책 합계 19,461종

〈表 6〉 奎章閣 圖書 移管 內譯(1915년 말 현재)

내 역	종 수	책 수
개대의 도시	16,714종	137,532책
새로 구입하거나 등사한 책	153종	606책
기부받은 책	8종	36책
대백산 사고본	1,216종	5,777책
오대산 사고본	599종	4,136책
계	18,690종	148,087책
그 밖에 총무과에서 인계한 일본도서	151종	583책
총 계[59]	18,841종	148,670책

出典:《參事官分室關係書類》(一)

(55) 신라기 29종, 고려기 87종, 조선기 932종(《개요》, p. 45).
(56) 위와 같음.
(57) 《개요》, pp. 46-47.
(58) 위 책, p. 47.
(59) 1915년 12월의 종·수와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그 이유는 확인할 수 없으나 다만 시점이 1~2개월 차이로 해서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152,159책이었다.[60] 여기에는 재래의 도서와 새로 구입하거나 등사한 도서, 기부 도서, 태백산과 오대산으로부터 옮겨온 도서[61], 그 밖에 총무과에 인계하지 않은 일본도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도서가 현재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奎章閣圖書인 것이다. 구체적인 이관내역은 〈表 6〉과 같다.

그리고 도서의 정리는 1913년부터 7월부터 착수하여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수행되었다.[62]

① 朝鮮圖書와 中國圖書의 구분
② 圖書臺帳의 작성
③ 番號紙의 첨부(한 部마다 번호를 부치고 册이 여러 있는 경우는 잘게 나누어 번호를 부쳐 한 책마다 번호지를 첨부한다)
④ 特別取扱本의 결정과 目錄의 작성
⑤ 카드 작성
⑥ 카드 臺帳의 작성
⑦ 新番號에 의한 書架 배열
⑧ 部門別 目錄의 작성
⑨ 書架見出帳의 작성
⑩ 裝訂의 수리

참고로 이들 도서의 서고 배열은 〈表 7〉과 같다.

〈表 7〉 奎章閣 圖書의 書庫排列(1915년 12월말)

구　분	서　고	종　수	책　수
중 국 본	第 參 庫	2,467	18,041
	第 四 庫	4,014	63,886
계		6,481	81,927
조 선 본	第 一 庫	4,137	15,437
	第 二 庫	6,834	22,848
	第 四 庫	70	9,721
	第 五 庫	849	1,901
	第 六 庫	714	1,149
	別 庫	376	19,176
계		12,980	70,232
총	계	19,461	152,159

出典 : 《參事官分室關係書類》(二)

그러나 1915년 8월 현재 도서명의 訂正, 카드 작성과 카드대장의 작성, 부류별 목록의

(60) 《參事官分室關係書類》(二).
(61) 1914년에는 태백산·오대산 양고의 도서를 서고로 옮겼다(《개요》, p. 26).
(62) 《參事官分室關係書類》(一).

작성은 완료되지 못하고 이후 작업으로 넘어갔다.[63]

그 밖에 도서의 해제는 기존의 원고를 다시 개정하여 1,468종의 해설을 탈고한 뒤 1915년 3월에 1책으로 인쇄하였다.[64] 다음 실록 발췌작업을 계속하였다. 그리고 참사관실에 보관 중인 활자를 1913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 실물을 조사하고 그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용기에 넣었으며 특히 연대기 자료를 통해 鑄造연대를 조사하였다.[65] 끝으로 1913년에는 오대산사고에 있던 실록 439책을 東京帝國大學에 기증하기도 하였다.[66]

四. 맺 음 말

1910년 조선을 강점한 뒤, 일제가 벌인 舊慣制度調査事業은 식민지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것은 漸進的 同化主義에 입각하여 民族文化를 말살하기 위한 기초사업이었다. 더군다나 1910년대 前半의 구관제도조사사업은 이후 문화정책의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1910년대 前半 取調局과 參事官室이 담당한 구관제도조사사업은 주목할 만하다. 우선 담당 관서의 기능, 관원 구성 그리고 조사방법과 내용 등을 통해 볼 때, 식민통치를 위한 자료 제공과 법률제도를 비롯한 통치제도의 확립에 주안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사정은 조사방법과 내용에서 잘 드러난다.

조사방법을 보면, 실지조사와 문헌조사가 병행되었다. 물론 전자가 주된 작업이었다. 그것은 「朝鮮民事令」과 「朝鮮刑事令」으로 대표되는 식민지 법제의 제정과 보완이 당면과제인데다 어디까지나 일본 법령체계에 기반을 두고 추진된 데 있었다. 따라서 문헌조사는 전자를 보완하는 작업에 불과하였다. 그 밖에 奎章閣 圖書의 정리라든가 實錄 拔萃作業, 圖書解題作業 그리고 각종 참고자료의 수집 역시 문헌조사의 일환이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론과 유기적인 관련하에 조사 대상과 내용 역시 식민지 법제 제정을 비롯한 통치 전반에 걸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문헌조사의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 만큼 이 경우에도 법제적인 접근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후 일제의 문화정책은 이러한 방향 속에서 꾸준히 추진되었다.[67] 물론 1919년 3·1운동을 비롯한 한국인의 항일민족해방운동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으로서 문화정책이 더욱 강화되었다. 가령 日帝 官學者의 한국사연구가 대표적인 경우이다.[68] 그러나 그 역

(63) 이 시기 이미 완료된 목록 등은 서울대 규장각에 다수 소장되어 있다(신용하, 앞 논문 pp. 75-76 참조).
(64) 이에 관해서는 《朝鮮圖書解題에 관한 書類》(奎 26791) 참조.
(65) 《參事官分室關係書類》(一)
(66) 《개요》, p. 26.
(67) 1915년 5월 총독부관제와 중추원관제가 개정되어 구관제도에 관한 조사는 참사관실로부터 중추원으로 이관되었다(《관보》 호외, 칙령 제62호, 1915년 5월 1일).
(68) 金容燮, 1963 〈日帝官學者의 韓國史觀—日本人들은 韓國史를 어떻게 보아왔는가—〉 《思想界》

시 식민지 기초조사사업인 구관제도조사사업과 같은 맥락이었기 때문에 가장 비역사적이고 제국주의적인 논리를 내포한 가운데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963년 2월호.